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2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오지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, 결원 발생 시 후임 위원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, 자문위원의 기피·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심사자문위원의 명칭을 '자문위원'으로 정의하고,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,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
(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)
- 나. 자문위원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의 위촉 절차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
(안 제5조의2제4항)
- 다. 자문위원의 제척 규정을 정비하고,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및 자문위원의 회피의무를 신설하여 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(안 제5조의2제5항 ~ 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6. 8. 3. ~ 8. 7.

○ 제출방법 : 방문(주말·공휴일 제외)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

○ 기재내용 : 붙임 서식 참조

○ 제출기관 : 하남시의회(의회운영 전문위원실)

- 주 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, 하남시의회)

- 전 화 : 031-790-6510

- F A X : 031-790-6529

- 홈페이지 : <https://council.hanam.go.kr/> (의안정보 → 조례안 예고)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2제2항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
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
의 부분 중 “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자문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
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
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
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
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
기간으로 한다.

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
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자
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
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

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	제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<u>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	② ----- <u>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</u> ----- -----.
③ <u>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</u>	③ <u>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
④ <u>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</u>	⑤ <u>자문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<신 설>

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